
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정연욱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8754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4. 30.

발 의 자 : 정연욱 · 신성범 · 김기웅  
김승수 · 박성훈 · 서명옥  
정동만 · 안상훈 · 김희정  
이종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4년 5월 「국가유산기본법」이 제정·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이 ‘원형유지’에서 ‘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·발전’시키는 것으로, 국가유산수리의 원칙 또한 ‘원형보존’에서 ‘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’으로 확장되고 발전되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여전히 ‘원형보존’에 한정되어 국가유산수리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

이에 「국가유산기본법」에 따라 현행 법률의 목적 및 기본원칙과 그에 따른 수리 관련 원칙 등을 개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목적 등을 발전적으로 재설정하고자 함(안 제1조 등).



##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·계승하기”를 “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을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원형보존에”를 “유형적·무형적 가치보존에”로 한다.

제6조제4호 중 “원형을”을 “유형적·무형적 가치를”로 한다.

제33조의2제3항제1호 중 “원형을 보존하기 위한”을 “유형적·무형적 가치보존에”로 한다.

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원형대로”를 “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에 따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33조의2(국가유산수리의 설계 승인) ① · ② (생략)

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.

1.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였을 것

2. 3. (생략)

④ ~ ⑥ (생략)

제37조(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) ① (생략)

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이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.

4. -----  
-----  
-----유형적·무형적  
가치를-----  
-----  
-----

제33조의2(국가유산수리의 설계 승인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-----유형적·무형적  
가치보존에-----  
---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37조(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에  
따라-----  
-----  
-----.

1.·2. (생략)

1.·2. (현행과 같음)